

2004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사업지침 안내

◆ 목적

-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등급 및 포장규격, 표시기준에 따라 산지에서 농산물을 선별, 포장 출하하므로써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신용거래 실현
- 농산물의 수송, 적재, 보관 등의 물류표준화를 통하여 유통 능률향상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수취 가격 증대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도도
- 산지에서 선별포장 출하하므로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 최소화

◆ 법적 근거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 제1항
 -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제고, 유통 능력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 표준규격의 제·개정 및 고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위임

◆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의 변천

가. '70~'80년대는 농협이 주관하여 농산물 표준규격화 사업 추진

- 농협에서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보급

나. '90년대는 표준규격관리 업무가 농협에서 농관원(구 농경)으로 이관('92)

- '92년도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표준등급규격을 품질위주로 개정하고, 미제정 품목에 대한 규격제정 확대
- '97년부터는 국가물류표준화 정책에 따라 농산물 포장규격을 물류표준화기준에 맞게 개편

- 한국산업규격(KS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모듈(1,100mm × 1,100mm)을 농산물 표준 포장규격 치수로 채택

1. 목 적

-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 추진
-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신용·통명거래 정착
-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억제 및 유사도매시장과의 차별화 실현으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유도

2. 추진방향

- 규모화된 산지 유통전문조직에 선별·포장비용 중점 지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단순 포장재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우대 지원
- 유통량이 많으나 포장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수확 상차비 추가지원으로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하고,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정
- 규격출하실적 평가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여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00	2001	2002	2003	2004	2005이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	사업량	1,005,000	272,000	272,000	272,000	256,397	1,103,000
	계	522,910	222,740	181,966	181,966	171,530	737,884
	국 고	130,950	66,822	54,590	54,590	51,459	221,366
	지방비	64,376	-	-	-	-	-
	자부담	327,584	155,918	127,376	127,376	120,071	516,518

5. 2004.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포장재비 지원
 -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농산물에 포장재비 일부 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에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일부 지원
-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무, 배추, 마늘, 양배추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조직 및 산지유통인 등에 포장재비 및 수확 상차비 일부 지원

나. '0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천매,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부담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256,397	171,530	51,459	120,071
- 포장재비지원			42,459	
- 공동선별비 지원			7,000	
-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2,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소비안전과 : (02)500-1833~4

단위: 천매, 백만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품질관리과 : (031)445-5515, Fax 443-409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농 협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다. 사업별 지원요령

(1) 포장재비 지원

(가) 지원대상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 친환경인증/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대상품목

-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
 - 포장화 우대품목(무, 배추, 마늘, 양배추),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은 제외
 - ※ 단, 친환경인증, 품질인증을 받은 곡류·두류는 지원하되 '05년부터는 제외

(다) 대상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펄프용기, 지대 중 표준규격 포장재(겉포장 및 속포장)
 - 단, 속포장한 농산물을 담아 수송목적으로 사용하는 겉포장은 포장규격 거래단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원내용

-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포장재비 일부지원

(2) 공동선별비 지원

(가) 대상조직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나) 지원품목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농산물
 - 단, 포장화우대품목(무, 배추, 마늘, 양배추),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은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조직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 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산지유통 전문조직이 이를 확인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인정
 - 매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직이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공동선별 후 공동계산 없이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에도 공동선별 인정

(3)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가) 지원대상

- 포장화우대품목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등

(나) 지원품목

- 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절구배추, 마늘, 양배추

(다) 지원내용

- 지원품목을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출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
 - 포장재비 및 수확 상처비 일부지원 :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출하품 (단, 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 목재상자는 수확 상처비만 일부 지원)
 - 포장재비 일부지원 :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출하품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가) 포장재비 지원

- 1순위 : 공동선별조직
 - 2순위 : 기타 일반조직(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단, 친환경인증, 품질인증품은 생산자조직 등급분류와 관계없이 신청하여 제작 출하한 수량의 100%를 지원

- 단, 또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당해 연도의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잔량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잔량은 최우수조직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

(나)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2) 사업계획서 제출

(가) 포장재비 ·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생산자조직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관원이나 지역농협에 제출(04.1.10까지)
- 지역농협은 신청분을 취합하여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2004. 1. 15일까지)
-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지역 산지 유통인 연합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2004. 1. 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후 경작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4. 1. 15일까지)
- 2003. 1. 20일까지 2004년도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중 사업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2004년도 사업신청 생략 가능
- 포장화 우대품목은 매년 신청

(3) 사업자 선정

(가) 포장재비 ·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2004. 1. 31일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 농관원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2004. 1월중)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

협 시 · 군지부에 통보 및 지원에 보고

- 농관원 출장소

- 지원 보고 및 농협 시 · 군지부에 통보(2004. 2. 5일까지)

- 사업자 및 제외조직에 통보(2004. 2. 10일까지)

- 농협 시 · 군지부

· 지역 농협에 통보(2004. 2. 10일까지)

- 포장화우대품목은 농관원 지원장이 사업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지원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자별, 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가 포함된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

- 지원 : 출장소 및 지역 산지유통인 연합회장에게 통보(2004. 2. 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 : 사업신청자에게 통보(2004. 2. 15일까지)

(4) 지원기준 및 조건

- (가) 포장재비 지원 (국고 20~30%, 자부담 80~70%)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은 포장재 신청량에 대하여 제작 출하하는 수량의 100%, 포장재비의 30%를 지원

- 그 외 사업자는 해당조직이 신청하여 제작 출하하는 수량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수량을 결정하고 포장재비의 30% 지원

-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은 아래와 같이 포장재비 국고 지원율을 조정하여 지원

- 국고 20%, 자부담 80% : 장미, 사과, 배, 백합, 들깨잎, 쥬키니호박, 방울 토마토, 조롱수박,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중 곡류(잡곡류 포함)·두류

※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중 곡류·두류는 '05년도부터는 지원중단 예정

-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구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가점수	90점이상	70점이상	70점 미만
지원비율	신청량의 100%	신청량의 70~90%	신청량의 50%이하
평가항목	시설규모, 상품의 고급화, 소비자 점검결과, 품질관리활동, 특별 가·감정 등 5개 항목		

마. 사업시행

(1) 사업비 지원

(가) 포장재 제작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제작 전에 반드시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농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하고, 포장화우대 품목은 협의 생략 가능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품목의 출하 및 표시방법)에서 정한 표시사항과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표시 의무화

• 겉포장내의 속포장에는 “포장재 중량”, “포장재 치수” 표시 생략 가능

•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 등은 스티커 또는 표전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포장재내에 삽입

• 친환경인증·품질인증품은 “표준규격품문구”, “표장표시” 생략 가능하나, “표준규격 포장재” 한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품은 “품종”, “등급표시” 생략 가능 (단, 저농약 농산물은 제외)

-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목재상자)을 통한 파렛타이징 규격출하시「표시사항」표시 생략 가능

- 농관원은 포장재제작 협의시 사업자가 직접 참여토록 하여 협의안 대로 규격 포장재가 제작되도록 하고, 포장재 제작협의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자체보관, 사업자 각1부)

(나) 사업비 지원

○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비가 편중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관원은 농협과 협의하여 사업비 조정 시행 가능

(2) 보조금지급 신청

(가) 포장재비 지원

○ 사업자가 포장재비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년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다)가 기재된「세금계산서」와「농가별 포장재공급내역」의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다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농가별「포장재 공급내역서」는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사업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다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서」원본을 제출

○ 사업자가 농관원에 증빙서류 제출시「제작포장재 1매」를 제시

- 포장재 제작협약서와 실제 제작포장재의 크기, 표시사항 등의 일치여부 확인

(나)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각 사업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대표는 해당 사업장에 출하된 무, 배추, 마늘, 양배추에 대해 표준규격품여부, 출하수량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 「표준규격 포장 출하확인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자체 보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출하처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도달 되도록 송부

- 도매시장의 경우 포장화 우대품목이 비상장 품목일 때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비상장품목 협의회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

- 사업장대표는 「표준규격모장 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출하처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 「표준규격모장출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월단위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출하주 경작지 관할 지원 및 출장소에 "표준 규격포장화 우대품목 출하내역"을 통보(12월분은 2004. 12. 20일까지)

- 출하처 관할 출장소장은 「표준규격포장 출하확인서 접수대장」을 비치 활용

(3) 보조금 집행

(가) 포장재비 지원

- 농관원 출장소장은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2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농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자 예금계좌에 국고보조 지원액 입금
 - 국고보조 지원액은 매 지급시마다 제작매수(사업량 범위 이내), 지원수량 비율, 납품단가, 보조금액비율을 곱하여 산출
- 우수한 재배기술, 재배여건, 포장재 단가변동 등으로 포장재 제작매수가 당초 신청량보다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나)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 경작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출하처 관할 출장소장이 통보한 사업자별 「포장화 우대품목 출하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 "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 상처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되, 단량이 없는 품목은 비슷한 단량의 기준단가 적용
-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출장소장이 요청한「보조금 지급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출하주 예금계좌에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입금
 - '03.12.21일 이후 출하물량에 대하여 '03년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04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04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 사과, 배, 단감 등과 같이 저장되었다가 다음해까지 출하되는 농산물의 출하기간 적용은?

답 변 | 「출하기간」 적용은 당해 품목의 출하가 완료되는 시점 까지임

질 의 2 | 농산물표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친환경 인증 품목도 포장재비 지원대상이 되는지?

답 변 | 친환경농산물은 유제품의 표준포장규격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저농약재배 인증품은 "등급"을 표시해야 하므로 유제품의 표준등급규격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

질 의 3 | 곁포장재와 속포장재의 포장재비를 같이 신청한 경우 지원을 할수 있는지?

답 변 | 포장재비 지원기준에 맞으면 가능함

질 의 4 | 일반농협이 매취 또는 수탁한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포장재비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지원이 가능함

질 의 5 | 산지유통전문조직이 공동 선별한 농산물을 프라스틱 상자나 다단식목재상자로 출하한 경우 포장재비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공동계산을 한 경우는 가능함(공동선별, 공동계산 정산서 및 보조금 입금통장 확인)

질 의 6 | 맷쌀의 등급규격은 '04부터는 양곡관리법에서 정한기준을 따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규격은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 농산물표준규격 중 찹쌀 포장규격을 적용하면 됨

질 의 7 | 농림부로 지정 받지 않은 산지유통전문조직도 공동선별비를 받을수 있는지?

답 변 | 농림부로부터 지정 받은 조직만 받을 수 있음

질 의 8 | 포장화 우대품목을 공동선별, 공동 계산할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대상품목에서 두, 배추, 마늘, 양배추,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은 제외하였음

질 의 9 | 수출하고 남은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경우 최우수조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답 변 | 당해 연도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남은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수출할 경우, 최우수조직 지원을 적용하여 지원가능

질 의 10 | 포장화우대 품목을 환경농업단체(유기농협회 등)에 출하할 경우 포장재비 및 상차비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지원할 수 없음(공영도배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출하시 만 가능)

질 의 11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관할 농관원이나, 지역농협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농협의 역할은?

답 변 | 지역농협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농관원에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임

질 의 12 | 친환경조직도 평가 후 지원해야 하는지?

답 변 | 친환경인증조직 및 농가는 사업평가를 하지 않고 포장재를 제작 출하한 수량 100%지원

질 의 13 | 포장화우대품목지원 중 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 목재상자는 규격포장출하 확인서만 제출하면 수확 상차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 변 | 각 사업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대표가 포장화우대품목의 표준규격품여부 및 출하수량을 확인한 후 발급한 「표준규격포장출하 확인서」제출시 지원 가능

질 의 14 |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 농관원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종합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시·군지부와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답 변 | 평가대상 사업자가 지역농협일 경우는 당연히 시·군지부와 합동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함

질 의 15 |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중에 주키니 호박이 포함되어 있는데 애호박, 풋호박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답 변 | 애호박, 풋호박은 포함되지 않음

질 의 16 | 친환경 및 품질인증품은 어느 규격을 적용하여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지?

답 변 | 친환경인증품 중 저농약재배품, 품질인증품은 해당 작목 또는 유사 품목의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등급표시를 하면 됨

질 의 17 | 포장재 공급을 위탁받은 농협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조급 지급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 변 | 포장재 공급자는 포장재를 제작하는 제조업체 또는 포장재 전문 유통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음

질 의 18 | 사업자가 포장화 우대품목을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를 이용하여 출하한 경우 상차비를 지급하려면 누구한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

답 변 | 출하처의 사업장 대표가 발행한 별지 5호 서식 "포장화우대품목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를 제출 받으면 됨

질 의 19 | 소포장 플라스틱 용기로 출하하였을 경우 속포장으로 취급하여 포장재 중량, 포장재 치수 표시를 생각할수 있는지?

답 변 | 플라스틱 용기는 속포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포장재 중량 및 포장재치수는 생략 가능

질 의 20 | 규격포장재로 포장하여 출하하는 친환경 인증품은 등급표시를 해야하는지?

답 변 | 친환경인증품중 저농약재배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품종" "등급표시" 생략가능

질 의 21 | 사업자가 포장재비 신청시 포장재 제작업체 및 공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유통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가능한지?

답 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인 경우 가능

질 의 22 | 포장재비 국고 보조금지원을 받은 표준규격포장재에 유통업체표시를 해도 되는지?

답 변 | 표기할 수 없음(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전화번호만 표기)

질 의 23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12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닌 그 물망은 사업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 그 물망도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격을 사업단가로 적용

질 의 24 | 사업단가를 최고 1,2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대, 그물망, pp포대 및 속 포장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답 변 | 포장재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질 의 25 | 포장화우대품목 및 공동 선별비의 당해연도 사업비집행 종료 기준 일은?

답 변 | 모두 03. 12. 21일 이후 출하물량에 대하여는 '03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4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질 의 26 | 기타 생산자조직이 품목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을 경우 조직 평가를 품목별로 해야하는지?

답 변 | 현재는 생산자 조직단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검토할 사항임

질 의 27 | 친환경인증 조직평가시 조직원중에 무농약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을 경우, 소비자 품질평가와 부적합품 발생실적을 적용하여 지원 사업량 차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 변 | 합산하여 기준에 따라 차감

질 의 28 |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적용범위는?


답 변 | 백화점, 활인매장, 직거래장터, 도시소비자와의 직거래 등 거래증빙자료 (품목, 물량, 금액 등)가 있는 경우 인정

질 의 29 | 다단식목제 상자의 속포장은 포장재비를 지급해야하는지?

답 변 | 표준규격품, 등급,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 표시사항을 표시한 경우 가능

질 의 30 | 속포장 없이 다단식목제상자로 출하시 상차비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상차비는 속포장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해야 하므로 현재는 지원할 수 없으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축 발 전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평판지(주)

대표이사 김배근

5월 27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